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6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피 고 인 1. 김종성
주거
등록기준지
2. 동양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소재지
대표이사
검 사 000(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00(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000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김종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0 00구 00로 00, 000 소재의 '동양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위 조합의 정관 제55조 제4호를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유사업자(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개설신고사업으로, 동조 제5호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또는 연합회나 동양의학표준과학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설립인가를 한 서울특별시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정관을 변경하고도 설립인가를 한 서울특별시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동양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김종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

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관의 변경'이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처벌받는 사항'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1호는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72조 제1항은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의 각 설립', '공제사업의 개시'에 대하여 시·도지사 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 제3항은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의 변경시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그리고 앞서 본 조합 등의 설립 등에 대하여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입법자가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이를 규정하지 않으면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라고만 규정한 사항은, 그 가벌성을 달리하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¹⁾

1)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1호, 제35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처벌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인가를 받지 아니한 정관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정관의 변경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을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기존 법률로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처하기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제·개정 등 입법조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법률해석으로 쉽게 그 적용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별지

범 죄 일 랑 표				
연번	일 자	변경 정 관	변경 전	변경 후
1	2020. 7. 24.	제55조 제4, 5호	제55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4.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 의료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55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4.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 의료 유사업자(침구사, 집골사, 안마사) 개설 신고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또는 연합회나 동양의학표준과학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2021. 4. 28..	제3조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0000시 00구 00로 00-00, 0층, 00 빌딩에 두고, ‘의료생협’ 0000침구원은 같은 사업구역 내 0000시 00구 000로 00길 00, 0층, 00빌딩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0000시 00구 000로 00, 000호, 00빌딩에 두고, ‘의료생협’ 0000침구원은 같은 사업구역 내 0000시 00구 000로 00길 00, 0층, 00빌딩에 둔다.
3	2023. 2. 22.	제3조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0000시 00구 000로 00, 000호, 00빌딩에 두고, ‘의료생협’ 0000침구원은 같은 사업구역 내 0000시 00구 000로 00길 00, 0층, 00빌딩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0000시 00구 00로 00, 000호, 00000회관 내에 둔다.